

집단 소송 제안 합의안 공고문

1. 뉴욕 시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2. 가족 지원 프로그램(Family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현금 지원금을 받거나 현금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1번 및 2번 질문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집단 소송 제안 합의안이 귀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전체 공고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송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요?

뉴욕 주 임시 및 영구 장애 보조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의 위원장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송은 OTDA가 뉴욕 시의 합리적인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게 하는 뉴욕 시 거주 가구에 대한 임대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뉴욕 주 사회보장 서비스법(New York Social Services Law)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은 *Daniela Tejada et al. v. Samuel Roberts* 로, 색인 번호는 453245/2015 입니다. 이 사건은 뉴욕 주 대법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당사자들은 승인을 위해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누가 합의안의 영향을 받습니까?

법원은 “Family Assistance Program (“집단 구성원”)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조건부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Hughes Hubbard & Reed LLP 및 The Legal Aid Society 는 집단 구성원을 대표합니다.

합의안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법원이 합의안을 승인한 후 발효되는 합의는 5년간 지속됩니다. 제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거 또는 노숙 방지를 위한 임대 보조금 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2. 퇴거 또는 노숙 방지를 위해 집단 구성원이 임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최대 월 임대료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3. 퇴거 또는 노숙 방지를 위해 임대 보조금을 받는 소득이 없는 집단 구성원은 임대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 보조금을 받는 소득이 있는 집단 구성원은 여전히 소득의 일부를(일부 경우 소득의 최대 30%)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퇴거 또는 노숙 방지를 위한 임대 보조금의 액수와 집단 구성원이 여전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임대료는 향후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가정 폭력의 피해자이며 새 아파트를 찾아야 하는 집단 구성원은 임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는 아파트 임대인 목록에 이름이 없거나 퇴거 절차를 밟고 있는 집단 구성원은 체납 임대료를 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 구성원이 받을 수 있는 체납 임대료가 증가합니다.
8. 모든 집단 구성원은 뉴욕 시 인적 자원 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에 대해 이 소송에서 제기한 모든 청구 및 유사한 청구를 5년간 제기하지 않습니다. 즉, 5년 동안은 집단 구성원이 제공되는 임대 보조 금액의 “적절성”에 반하는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이 합의는 아직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승인하면, 모든 집단 구성원은 합의안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집단 구성원인 경우 합의안이 공정, 합리 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법원 및 집단의 변호인에게 (i) 본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ii) 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iii) 법원이 고려하기를 원하는 문서 또는 기타 증거와 함께 서신을 보내야 합니다.. 이 서신은 반드시 **2017년 8월 11일까지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아래 두 주소에 모두 보내야 합니다.

The Clerk of the Court
New York County
Attn: *Daniela Tejada et al. v. Samuel Roberts*
60 Centre Street, Room 161
New York, NY 10007

Theodore V.H. Mayer
Fara Tabatabai
Hughes Hubbard & Reed LLP
One Battery Park Plaza
New York, NY 10004

법원은 2017년 9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합의가 공정한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공청회는 Jennifer G. Schechter 재판관 주재로 다음의 주소에서 열립니다.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111 Centre Street, Room 623
New York, NY 10013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

제안 합의안의 사본 또는 합의안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http://bit.do/fepssettlement> 를 방문하거나 844-400-4538 번으로 집단 구성원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하십시오.